

2025/26

항만교통안전관리자 등 항만운송사업법

엠북 해양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✦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✦ 24분 완성
- ✦ 법, 시행령/시행규칙(일부) 종합
- ✦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
도서명 : 항만운송사업법

ISBN : 979-11-7393-061-4

발간일 : 2025-08-07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4,500원



항만운송사업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항만운송사업(p16)

제2장의2 항만운송관련사업(p29)

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(p32)

제3장 보칙(p37)

제4장 벌칙(p46~49)

[법상 용어]

검수사등은 검수사, 감정사, 검량사

검수사업등은 검수사업, 감정사업, 검량사업

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,
특별자치도지사

[약어]

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

부령은 해양수산부령

사업자는 항만운송사업자

관련사업자는 항만운송관련/사업자

사업자등은 사업자, 관련사업자

운송사업등은 항만운송사업,

항만/운송관련사업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3조

1. 목적

- 항만운송 질서 확립,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
- 공공 복리 증진

2. 정의

가. 항만운송

- 타인의 수요에 응해 하는 다음 행위

1) 항만하역사업

가) 선박을 이용해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나
선박운항업자 위탁 받아 항만에서

-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 인도
-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

나) 상기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해 다)에서
자)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해 함

다)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에서 내림

라) 항만에서 선박이나 부선을 이용해 화물 운송,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간(이하 지정구간)에서 부선이나 범선을 이용해 화물 운송,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부선이나 뗏목을 예인선으로 끌고 항해

- 단, 다음은 제외

a) 해운법에 따른

·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

·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해 하는

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

b) 다음 운송

-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
운송

-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/폐기물 운송

- 탱커선/어획물운반선에 의한 운송

마) 항만에서 선박이나 부선을 이용해

- 운송된 화물을 창고나 하역장(수면

목재저장소는 제외, 이하 같다)에 들여놓음

-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감

바) 항만에서 마) 화물을

-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

- 부선에 싣거나 부선에서 내림

사)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
편성해 운송

아)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해

-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
들여놓거나, 선박이나 부선을 이용해 운송된
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음

-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
내가거나, 선박이나부선을 이용해 운송될
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내감

자) 항만에서 아)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
싣거나 내리거나 보관

2) 검수사업

-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 개수 계산, 화물 인도/인수 증명(이하 검수)

3) 감정사업

- 선적화물, 선박(부선 포함) 관련 증명, 조사, 감정(이하 감정)

4) 검량사업

-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 용적/중량 계산, 증명(이하 검량)

나. 항만운송사업